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1.4.1>

차대번호(원동기형식) 통보서

[ ]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[ ] 표기시행 폐지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명(명칭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
	주소	

변경내용	변경 전
	변경 후

표기	폐지사유
	폐지예정일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
○ 표기시행자의 변경(성명, 법인의 대표자 및 주소)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, 표기시행자가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

210mm X 297mm(일반용지 60g/㎡)